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
----------	----

제출일자 : 2001. 12.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통·반설치조례중 통·반장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어,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여도 해촉할 수 없는 등, 통·반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장기 질병, 비위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장기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 등 통·반장으로서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 입법 예고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통·반장의 위촉”을 “통·반장의 위·해촉”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6개월이상의 장기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형사 또는 비위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통·반장의 위촉)</p> <p>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5조(통·반장의 위·해촉)</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6개월이상의 장기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형사 또는 비위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